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1. 9. 22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9월 15일

나. 제출자 : 김주범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9월 19일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주범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, 교육지원과는 행정국 소속 부서로서 당연히 행정위원회 소관 임에도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,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현재에 맞게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제2호바목)
- 기존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-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더하여 명시함.(안 제8조제2항)
-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6항)
-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및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7항)
-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가 기존에 ‘연장자’로 되어있던 것을, 2011.7.14. 공포된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‘최다선의원을 우선 자격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 연장자의 순’으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2항)
-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의 경우 직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4항)
- 소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5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영)

-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삭제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함.

- 안 제3조제3항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
- 안 제8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추가 하고 같은조 제6항과 제7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그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를 기존의 ‘연장자’ 에서 2011.7.14. 공포된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‘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’ 하도록 개정함.
- 제12조제4항에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시 직무 대리자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리하도록 함.
- 제12조제5항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2일

발 의 자 : 김주범 의원 외 4인

## 1. 제안이유

도시시설관리공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속임에도 별도 표기되었던 교육지원과를 삭제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.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위원회의 소관 중 이미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된 부서인 교육지원과를 현재에 맞게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제2호바목)
- 나. 기존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,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- 다.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
- 라.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을 더하여 명시함.(안 제8조제2항)
- 마.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6항)
- 바.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및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8조제7항)
- 사.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 대행자가 기존에 ‘연장자’로 되어있던 것을, 2011.7.14. 공포된 「지방자치법」 중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‘최다선의원을 우선 자격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 연장자의 순’으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2항)

아. 소위원회 위원장 사고의 경우 직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 4항)

자. 소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2조제5항)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 및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의 제목 “(상임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)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“인 이내”를 각각 “명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”을 “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·처리와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(이하 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임위원회별 그”를 “상임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“회의규칙 및 의회운영”을 “의회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하나의”를 “하나의 상임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특별위원회”를 “특별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선임)”을 “(위원의 선임 및 개선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각 상임위원의 선임”을 “상임위원”으로, “선임한다”를 “선임 또는 개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은 제1항 규정에 따라”를 “위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그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,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.
-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선거의 예”를 “회의규칙 제6조에 따른 의장선거”로, “선거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특별위원회)”를“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”을 “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”로, “의결로써”를 “의결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산안과 결산”을 “예산안, 결산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한다.
-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-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“본회의에 보고한다”를 “의회사무국장은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위원 중”을 “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언어”를 “받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 중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회사무국장은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소관 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
- ②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소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,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⑤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13조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사항외의”를 “사항 외에”로 하고, “회의의 운영, 의사”를 “회의 운영 및 의사”로 하며,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 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위원회 9인 이내</li> <li>2. 행정위원회 9인 이내</li> <li>3. 사회건설위원회 9인 이내</li> </ol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수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명 이하</li> <li>2. -----명 이하</li> <li>3. -----명 이하</li> </ol>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</p> <p>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·처리와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(이하 “회의 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.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-----</p>

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

가. · 나. (생략)

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 
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 
사항

2. 행정위원회

가. ~ 마. (생략)

바. 교육지원과의 소관에 속하  
는 사항

3. 사회건설위원회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의  
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“상임  
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

-----.

1. -----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의회 운영-----  
-----  
-----

2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  
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  
단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  
항

③ 제2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  
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  
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 
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 
있으면 이를 행정위원회의 소관  
으로 한다.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---  
---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-----  
-----.

만,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의 선임)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 <후단 신설>

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

----- 특별위원회  
회의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-----  
----- 선임 또는 개선한다.

②----- 위원은 -----  
----- .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그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,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.

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상임위원장) ①-----

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  
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 
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 
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(생략)

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 
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 
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 
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  
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 
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 
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 
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 
회를 둔다.

③·④ (생략)

⑤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 
을 초과할 수 없다.

-----  
----- 명-----.

②-----  
-- 회의규칙 제6조에 따른 의장  
선거----- 선출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 받아 -----  
---. ----- 폐회 중-----  
-----.

⑤ 제4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 
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 
표결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 
수) ① ----- 여러 상임위원회  
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 
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 
경우에 ----- 의결로 -----  
-----.

② ----- 예산안, 결산, 기금  
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 
이하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

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----- 명 ----- 의회사무국장은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-----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-----.

③ ----- 받아 ----- 폐회 중 -----.

제11조(부위원장) ① ----- 명 -----.

② -----

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속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<신설>

--- 의회사무국장은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-----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소관 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소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,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<신 설>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  
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 
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 
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  
다 .

⑤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 
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 
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-- 조례에서 --  
-- 사항 외에 ----- 회의 운  
영 및 의사 -----  
----- 회의규칙-----  
-- .